

##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이행실적 보고서

2011.12.13

NICE신용평가(주)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개척해 온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신용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신용평가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의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과 행동양식을 명문화한 최상위 규정인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06년 5월 제정하고, 2011년 9월 개정하여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표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 그리고,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동 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내부교육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1년간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의 항목별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밝히고자 합니다.

---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NICE 신용평가(주) 윤리경영실 임종석 실장(☎ 2014-626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인터넷([www.nicerating.com](http://www.nicerating.com))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 A. 신용평가 과정의 질

### ■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수립과 적용

- NICE신용평가는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금융상품 및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Corporate 일반론, SF평가방법론과 산업별 평가방법론중 일부에 대하여 개정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개정 검토과정에 있는 일부 평가방법론은 2011년 중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용평가방법론 공시 현황(2011.9.30 현재)]

번호	구분	신용평가방법론	공시일	비고
1	산업	곡물가공	2010-09-20	
2	산업	메모리	2010-09-20	
3	산업	해상운송	2010-09-20	
4	산업	건설	2010-07-14	
5	산업	의류	2010-07-14	
6	산업	전선	2010-07-14	
7	산업	주류	2010-07-14	
8	산업	통신서비스	2010-07-14	
9	산업	항공운송	2010-07-14	
10	산업	생명보험	2010-06-30	
11	산업	손해보험	2010-06-30	
12	산업	신용카드	2010-06-30	
13	산업	은행	2010-06-30	
14	산업	할부리스	2010-06-30	
15	산업	SI	2010-06-29	
16	산업	TFT-LCD	2010-06-29	
17	산업	소매유통	2010-06-29	
18	산업	제지	2010-06-29	
19	산업	비철금속	2010-06-15	
20	산업	자동차	2010-06-15	
21	산업	자동차부품	2010-06-15	
22	산업	정유	2010-06-15	
23	산업	조선	2010-06-15	
24	산업	철강	2010-06-15	
25	산업	석유화학	2007-05-04	개정예정

번호	구분	신용평가방법론	공시일	비고
26	산업	섬유	2007-05-04	개정예정
27	산업	제약	2007-05-04	개정예정
28	산업	금융지주회사	2007-04-30	
29	SF	CDO	2010-05-11	
30	SF	Synthetic CDO	2010-05-11	
31	SF	부동산 PF 유동화	2010-05-11	
32	SF	ABCP	2010-05-11	
33	SF	오토론	2010-05-11	
34	SF	MBS	2010-05-11	
35	SF	CMBS	2010-05-11	
36	SF	신용카드 리볼빙 ABS	2010-05-11	
37	SF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Master Trust 방식의 이해	2010-05-11	
38	SF	기업 매출채권	2010-05-11	
39	SF	일반담보부채권	2010-05-11	
40	SF	리스자산	2010-05-11	
41	SF	SLBS	2010-05-11	
42	SF	유동화익스포저	2010-05-11	
43	SF	진정한 양도와 도산으로부터의 절연	2010-05-11	
44	SF	Project Finance	2010-05-11	
45	SF	RMBS 평가와 관련한 주택가격지수 작성 모형	2009-09-07	
46	SF	Market Value CDO	2006-06-05	
47	SF	선박금융과 자산유동화	2005-03-14	
48	기타	정부신용등급(Sovereign Rating)	2010-07-09	
49	기타	Corporate 일반론	2008-10-01	검토중

■ 신용평가 과정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ICE신용평가의 모든 신용등급 결정 권한은 내규에서 정한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서 보유하며,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세칙, 신용등급평정위원회운영지침 등의 성문화된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뢰성 및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적정성 및 평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애널리스트 및 평정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와 내규(정보및자료관리지침)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평정기록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실무팀을 2~3인의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B. 공시 이후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세척, 정기평정실시지침, 내부심사운영지침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의 공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갱신하며, 필요 시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환경변화가 기업의 신용위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도자료(Special comment) 또는 이슈리포트 등의 공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등급 사후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C. 신용평가 과정의 성실성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및 관련 내규에 규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특정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직간접적인 언급 및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Code of Conduct, 관련 내규 및 법규 등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준법감시규정 및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 A. 총칙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피평가자,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경제, 정치 및 기타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행위를 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평가방법론, 평가기준, 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

- NICE신용평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제1항(신용평가금지대상 열거)과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3.4.1항에 의거하여, 신용평가서 교부시 NICE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평가자가 NICE신용평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재된 “NICE신용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 여부”를 함께 발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을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평가대상 및 투자자에 대한 관계관리를 담당하는 BD(Business Development)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조직은 일반 기업 및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산업평가본부와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SF(Structured Finance)평가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방법론의 제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평가연구소장이 맡고 있으며, 여타 평정위원은 평가조직의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담당함으로써 영업조직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애널리스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애널리스트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등급평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등급평정위원회 소집시 “평정위원회 참석자 확인사항”을 작성하게 하여 피평가기업의 이해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에 대한 급여정책이 신용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보수가 신용평가등급의 결정, 평가수수료 등 피평가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도록 하여, 신용평가 담당직원은 개별 직원이 창출한 수익에 근거하여 평가되거나, 보상받지 아니합니다.

■ 이해상충문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사업부문과 여타 사업부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한국신용정보주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사업과 그 딸린 업무인 PF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예산수립 등에 있어 신용평가사업부문과 PF평가사업부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피평가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서 교부시, 피평가 기업에 대한 PF평가용역 수행 여부 및 해당 용역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를 공개하고 신용평가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피평가수수료를 피평가자에게서 수취했을 경우, 해당 피평가자에게서 수취한 평가수수료 수입과 비평가수수료 수입의 비율을 최근 월말로부터 1년간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일체의 마케팅 활동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실무와 수수료 관련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피평가자의 문의에 따라서 공시된 표준수수료 체계를 안내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수료 및 매출채권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는 BD본부에서 전담하도록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Code of Conduct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내부감사조직으로 감사부서(윤리경영실)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의사결정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을 주로 감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및 내규준수 실태를 모니터링,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이해상충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내부감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조직과는 별도로 신용평가사업과 타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를 관리하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운영규정으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세칙 및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부서(본부)간 이해상충여부의 심의,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심의, 기타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증권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서 임직원의 증권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하여 해당 보유증권의 적정성 여부 및 행동규범의 준수실태를 감사 받고 있습니다.

### 3. 투자자, 발행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평가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전자우편서비스, 간행물 등을 공시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방법론, 장기신용등급평가 결과분석, 산업위험평가, 연간부도율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등은 홈페이지 공시, 전자우편서비스 외에도 책자로 발간하여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평가대상 기업 및 시장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인 평가방법론, 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의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여 누구나 무료로 그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관련 정보가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블룸버그통신 등 여러 제휴기관에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B. 비밀정보의 관리

- NICE신용평가는 평가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계약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정보 및 자료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밀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과정에서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 이해관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평가사업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

- NICE신용평가는 IOSCO의 신용평가활동원칙(IOSCO Principle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Credit Rating Agencies) 및 기본행동강령(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의 각 조항을 지지하며 동 조항을 충족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 및 임직원은 Code of Conduct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준법감시 부서는 정기적으로 동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